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  
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< 정보통신망을 통한 미성년자의 권리침해 구제 강화 >

■ 이해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243호)

2026. 2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이복우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정보통신망을 통한 미성년자의 권리침해 구제 강화 ..... | 2 |

## 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해민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6. 1. 22.

다. 회 부 일 : 2026. 1. 23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,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,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 등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정보통신망을 통한 미성년자의 권리침해 구제 강화

##### 가.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“삭제등”이라 함)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법정대리인을 명시하고, ② 미성년자 관련 정보의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③ 미성년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소명 책임을 정보게재자에게 부여하고, ④ 임시기간 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 등)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<br>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<br>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<br>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<br>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<br>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<br>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<br>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<br>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<br>“삭제등”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|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
있다.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②·③ (생략)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

----. <후단 삭제> 다만, 미성년자(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삭제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정보게재자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3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30  
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--

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“임시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

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<후단 삭제> 다만,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정보게재자가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

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⑧ -----  
-----  
-----제3항-----  
-----  
-----.

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제44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-----.

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<sup>1)</sup>하고 있음.
- 그런데, 미성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, 성착취 등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, 성인보다 적시에 대응하여 침해 여부를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인의

---

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“삭제등”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.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“임시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
구제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① 미성년자의 경우 ‘법정대리인’도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, ② 미성년자의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③ 권리침해 여부의 소명책임을 정보게재자에게 전환하고, ④ 임시조치 기간 내 정보게재자의 소명이 없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-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, 미성년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함으로써,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.

-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 및 개정안의 실효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첫째, 개정안과 같이 침해 여부의 소명책임을 정보게재자에게 전환할 경우, ‘침해사실이 없음’의 객관적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게재자의 소명이 조금이라도 부

족하면 기계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“과잉 차단”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, 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 필요성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둘째,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**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**는 권리침해 정보를 차단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, 권리구제를 위한 임시조치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.
- 추가로, 현행법은 임시조치 기간 도과 후 후속 조치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, 개정안이 미성년자 관련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 도과 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**개인정보보호위원회**는 이미 실무적으로 임시조치 기간 내 정보게재자의 소명이 없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 조치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으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상 보호범위 확대를 통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임.
- **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**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, 현

행 제도하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소명만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보호 강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.

-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침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 가능한 영역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고, 과도한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.
- 이를 종합하면,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,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및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228 |